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 동향분석

임양미* 김혜금**

The Trend-analyses of Studies on Estimation of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Lim, Yang Mi Kim, Hye Gum

본 연구는 국내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동향분석을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국내 학술논문 및 정책연구소와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들 총 21편이었다. 본 연구대상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연도별 동향, 연구내용,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방법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보육비 산정연구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 수행되었으며 연구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 분석과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출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세부 운영비를 원아 수로 나누어 산출된 영유아 1인당 운영비를 합산하여 유아교육비·보육비를 산출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운영비에 대한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시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유아교육비, 보육비, 운영비

* 제 1저자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ym68@jj.ac.kr)

** 교신저자 :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부교수(khghoonba@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1997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년)’으로 어린이집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진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당시, 목적은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부모의 경제적 활동 지원이었다(김명순, 2013).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린이집의 양적확대라는 결과를 유발하였으며,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관련된 정책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김경희 등, 2011), 그 대표적인 제도의 예로, 평가인증제도,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등을 들 수 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국책사업이다. 2013년 2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은 86.4%(한국보육진흥원, 2013)로 사업수행 8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은 그 이전까지 구체적인 보육목표와 내용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지침 없이 어린이집이 운영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유발되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방해요인이 된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 본격적으로 고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2013년 현재 세 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해 운영 중이다. 한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교육과정이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었으며 2013년에는 만 3, 4세까지 확대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국가단위의 보육·교육과정은 만 0~2세 표준보육과정,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관련된 정책은 보육환경 및 서비스, 보육·교육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개선을 위해 현 보육비 수준이 적정하지 않으며 보육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보육전문가 및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김혜금, 2010; 임양미, 김혜금, 전경숙, 2010; 현진권, 2010) 정책적 개선시도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비 현실화의 필요성은 민간중심의 우리나라 보육구조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이 부모의 보육비에 의존해 운영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89.7%)(보건복지부, 2012b)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유아의 대부분(79%)(보건복지부, 2012b)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보를 위해 보육비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영아보육율(96.8%)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은 2006년부터 도입된 영아 기본보조금(현 명칭: 기본보육료)제도(서문희, 2006)로 인해 2013년 현재 영아 1인당 연령별로 각각 115,000원(만 2세), 174,000원(만 1세), 361,000원(만 0세)(보건복지부, 2013)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 금액수준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수준(예: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의 30% 지원)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미비하다. 또한 유아보육율(55.4%)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육비에만 의존해서 주로 운영되므로 보육비 현실화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열악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낮으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증명하듯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각각 121만원, 115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162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이미화 등, 2012),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등, 2012). 따라서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비 현실화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민간어린이집과 운영주체의 특성이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비·보육비에 대한 법정 수납지침은 다르며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시,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우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국공립 및 법인 등의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 중앙정부가 고시한 보육비의 수납한도액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유아반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비 한도액을 정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반면 우리나라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3,925개로 전체 유치원(8,370개)의 46.9%를 차지하며(유치원 알리미, 2013), 유아교육비 수납한도액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

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원장이 유아교육비를 정하되 동일 지역에 소재한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해당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감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크지 않다(송현숙, 이혜리, 2013). 따라서 어린이집의 보육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보육비 수납한도액이 매년 고시됨으로써 규제를 받는 반면 유치원은 사실상 원장이 자율적으로 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보육비 및 유아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비에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된 반면(보건복지부, 2012a),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구성하는 운영비 항목은 인건비 및 물건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그 밖의 경비(교육과학기술부, 2013)로 전반적인 기준만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급간식비는 유아교육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해 수납되고 있으며(문무경, 천세영, 황현주, 이진경, 201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비와 급간식비를 포함한 수익자 부담경비(급간식비, 종일반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를 매년 상향조정해 수납하는 사례가 보고됨으로써(송현숙, 이혜리, 2013)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출과 관련된 소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를 수행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고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제 법령, 시행령 및 사회적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질과 내용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표준’이라는 용어를 적용함으로써 표준유아교육비 또는 표준보육비를 산출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연구가 시작된 배경에 있어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는 19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 5년마다 유·초·중등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2000년대부터 주로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 증대와 수납비용 자율화 지침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고액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문무경 등, 2012). 반면 우리나라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육정책의 방향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육비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조세원(2005) 연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으로

수행된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비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후속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시된 보육비 수준은 지난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됨으로써 이 금액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김혜금, 2010; 이미화, 서문희, 임양미, 이진경, 2012)이 수행되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정해지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비 산정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보완하고자 몇몇 연구들(임양미, 2011; 임양미 등, 2010)이 실시되었다.

두 번째로, 유아교육비·보육비에 계산에 투입된 운영비 항목 및 계산방식은 연구주제(유아교육비/보육비) 또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대부분의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초·중등 유아교육비 산출연구에서 투입된 운영비 항목과 유사하게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설치비, 공통운영비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반면 보육비 산정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를 공통적으로 보육비 산출에 적용함으로써 급간식비를 포함하고 있다. 인건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직원에 대한 급여와 수당 등을 의미하며 교재교구비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재교구 및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시설설치비는 어린이집 건물 및 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비용이며 관리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 급간식비는 영유아 1인당 하루 필요 열량을 토대로 구성된 식단의 식재료를 구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비 산정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재산조성비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특정 운영비의 경우 보육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어, 보육비 산정 시, 몇몇 연구자들은 행사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리운영비 세부항목 중 차량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행사비는 보육과정에서 영유아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사경비를 의미하며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회의와 부모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원장 직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아교육비·보육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정에 대한 논의는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도입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본격화될 수 있다. 현재 ‘유보통합’의 정책방향은 부처통합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구조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앙정부는 만 0~2세 영아의 유치원 입학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염지은, 2013), 보육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하채림, 김경운, 2013)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반 보육·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었고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종일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대부분(95.5%)(육아정책연구소, 2011)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의 운영형태 및 보육서비스의 차이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과 산출모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산정 연구들의 동향분석을 토대로 두 기관의 비용 산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탐색하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비 현실화와 유아교육비에 대한 명확한 회계지침 수립 및 현실적이고 타당한 비용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보육과 유아교육 연구동향(김영옥, 2003; 이대균, 백경순, 2001), 발달연구 동향과 미래진단(김미경, 1998; 최미숙, 황운세, 2004), 유아교사교육 연구동향(고선미, 2000; 김춘희, 남기원, 우영숙, 최순덕, 2011), 수·과학·언어·영어·미술·체육교육 연구동향(노영희, 2009; 마송희, 2007, 2011; 정설희, 임양금, 안진경, 2009), 또래관계 연구동향(정설희, 류은주, 안연경, 2010), 다문화 관련 연구동향(김상림, 안효진, 이시자, 2011; 서현아, 김정주, 2010; 이경란, 정기섭, 2011; 임미정, 2012),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김병만, 2012)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비록 지금까지 유아교육비·보육비와 관련되어 향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문선화, 1995; 백선희, 김교성, 2003; 서문희, 2010; 송정은, 2005; 이재무, 송영선, 2012; 장영숙, 이효숙, 유경숙, 황운세, 2002; 하남재, 석재은, 2011; 허선, 박효진, 2010)이 소수 이루어졌으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비 중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 제도의 분석 및 평가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할 뿐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연구동향 분석기준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이대균, 백경순, 김현수, 2006; 정성수, 2008; 황해익, 1998)과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김현숙, 서병선, 2008; 문무경 등, 2012)을 통해 제시된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구내용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에서 제시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논문들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유아교육 및 보육, 교육재정 관련 등재(후보)학술지에 2013년 2월까지 발간된 논문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된 논문들, 유아교육·보육 및 재정관련 국책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소(예: 육아정책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강원도가족여성연구원), 민간단체(예: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등을 검색한 후, 종합한 총 21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술논문 외, 국책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이유는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이 개인단위가 아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의 형태로 실시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보육비 산정연구들 중 개인단위로 수행된 연구는 1편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분석대상 연구논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학술지 검색사이트인 KERIS, KISS, DBpia, RISS,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보육비(료)’, ‘유아교육비(료)’ 라는 주제어로 출간된 논문들을 모두 검색한 후, 보육비·유아교육비 제도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논문들은 제외하고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과 유아교육·보육 및 재정 분야 국책연구소(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원에 등록된 정책보고서 중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해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소(서울시정개발원, 서울여성가족재단, 경기개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전발전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및 민간단체(전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보육비·유아교육비 산정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및 교육재정 관련 등재(후보)학술지(유아교육학논집,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학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교육행정학연구, 유아교육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논문 11편, 유아교육·보육, 재정 관련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5편,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소 및 민간단체의 연구보고서 5편을 종합한 총 21편의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범주 및 기준

본 연구에서 시도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김병만, 2012; 손원경, 박진희, 전주영, 2010)과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강경석, 2001, 2005a, 2005b; 김현숙, 서병선, 2008; 문무경 등, 2012; 서문희, 박수연, 2008)에서 채택한 범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범주 및 기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된 분석범주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주제(유아교육비/보육비)에 따라 연도별 동향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은 한 가지 연구주제(유아교육비/보육비)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며 연구가 수행된 시기 및 사회배경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주제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선정된 기준은 연구내용으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내용 동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을 유아교육비 및 보육비 산정방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방법 측면에서 분석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강경석, 2001, 2005a, 2005b; 김현숙, 서병선, 2008; 문무경 등, 2012; 서문희, 박수연, 2008)에서 채택한 용어와 분석범주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되어 전반적인 산출모형, 유아교육비·보육비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항목별 계산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방법을 전반적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출모형, 유아교육비·보육비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항목별 계산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아교육비·보육비 전반적인 산출모형에는 유아교육비·보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산출절차와 산출단위(예: 월 영유아 1인 보육비, 연간 영유아 1인당 보육비), 산출기준(예: 어린이집·유치원 규모, 운영시간),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출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수집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아교육비·보육비에 투입된 운영비 항목은 유아교육비·보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을 제시하며 유아교육비·보육비에 투입된 운영비 산출과정은 세부 운영비별로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다루고 있다.

3. 자료분석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료분석 기준수립, 예비분석, 1차 분석, 2차 분석, 자료 중복처리 점검 절차를 거쳤다. 자료분석은 본 연구자(2인)와 연구보조자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 번째 절차로, 보육 및 유아교육 연구 동향분석 관련 선행연구들과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을 함께 고찰한 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들의 분석기준을 정하고 1차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1차로 확정된 자료 분석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 5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예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의견조정 및 합의과정을 통해 2차 최종분석을 완료하였다. 세 번째로, 분석기준 중 연도별 연구주제 경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구자가 정책보고서와 학술지에 유사한 내용으로 연구를 발표한 경우 전체 연구를 포괄하는 연구 1개로 처리하고 분석에 포함하여 연도별 연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도별 동향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도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을 연구주체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유아교육비를 산출한 연구들은 총 11편, 보육비를 산출한 연구들은 총 10편으로 나타남으로써 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연구주체에 따라 연도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비 산정연구가 출현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4년, 보육비 산정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2005년으로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이 보육비 산정연구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 수행된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도별 동향을 3가지 범주(2000년 미만, 2000~2005년, 2006년 이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2000년 미만과 2000~2005년에 집중적으로 수행된 반면 2006년 이후 수행된 연구는 불과 4편에 불과하였다. 반면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2005년 이후 집중적으로 수행된 경향을 보였다. 연구주체에 따라 수행시기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아교육비 및 보육비 산출연구의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된다. 즉,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육비 산정 연구들은 2000년부터 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고액화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본격화되었으며 보육비 산정 연구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가 보육의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비 산정이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도별 동향

N(%)

| 연도 | 연구주체 | |
|------|---------|---------|
| | 유아교육비 | 보육비 |
| 1994 | 1 (9.1) | 0 (0.0) |
| 1995 | 0 (0.0) | 0 (0.0) |
| 1996 | 0 (0.0) | 0 (0.0) |
| 1997 | 1 (9.1) | 0 (0.0) |
| 1998 | 0 (0.0) | 0 (0.0) |
| 1999 | 0 (0.0) | 0 (0.0) |
| 2000 | 0 (0.0) | 0 (0.0) |

| | | |
|------|------------|------------|
| 2001 | 2 (18.2) | 0 (0.0) |
| 2002 | 0 (0.0) | 0 (0.0) |
| 2003 | 0 (0.0) | 0 (0.0) |
| 2004 | 0 (0.0) | 0 (0.0) |
| 2005 | 3 (27.3) | 1 (10.0) |
| 2006 | 1 (9.1) | 1 (10.0) |
| 2007 | 0 (0.0) | 0 (0.0) |
| 2008 | 2 (18.2) | 2 (20.0) |
| 2009 | 0 (0.0) | 0 (0.0) |
| 2010 | 0 (0.0) | 2 (20.0) |
| 2011 | 0 (0.0) | 1 (10.0) |
| 2012 | 1 (9.1) | 2 (20.0) |
| 2013 | 0 (0.0) | 1 (10.0) |
| 전체 | 11 (100.0) | 10 (100.0) |

2.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구내용 동향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분석하고,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를 산출한 내용을 포함한다. 즉, 모든 유아교육비 및 보육비 산정연구들이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비용, 운영비를 중심으로 교육비와 보육비를 산정하는 공통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시장경제에 있어 특정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한국은행, 2010, 재인용)과 흐름을 같이한다(임양미 등, 2010).

한편 유아교육비 산정 연구들은 3개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사립유치원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교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반면 보육비 산정 연구들은 과반수(60%)가 어린이집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육비를 산정하고 4개의 연구만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추어 보육비를 산출한 특징이 있다.

<표 2>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연구내용

| 연구주제 | 연도 | 연구내용 |
|-------|------------|--|
| 유아교육비 | 1994~2012년 | -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산출 -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산출 |

| | | |
|-----|------------|--|
| | | - 전체 연구의 70%가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비 산출 |
| 보육비 | 2005~2013년 |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산출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비 산출 - 전체 연구의 60%가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보육비 산출 |

3.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에서 제시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방법 동향

연구주제(유아교육비/보육비)에 따라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방법 동향을 전반적인 산출모형, 유아교육비·보육비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항목별 계산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비

(1) 전반적인 산출모형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의 전반적인 산출모형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표 3> 참조)를 토대로 유아교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산출절차와 산출단위, 산출기준, 유아교육비 산출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자료수집방법별로 연구동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모두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제 운영비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원아 수로 나누어 유아 1인당 운영비를 산출 후 합산하여, 유아교육비를 산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비 산출단위에 있어 2006년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모두 연간 소요되는 유아 1인당 운영비를 토대로 연간 유아교육비를 산출한 반면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모두 월별 운영비를 토대로 월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비 산출기준에 있어 2006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령별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지 않은 반면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연령별로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였다. 특히 2006년 이전의 연구들은 유치원의 연령별 교사 대 유아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로 25명 및 35명의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반면 2008년 이루어진 연구들은 어린이집의 연령별 법정 유아 대 교사의 비율(예: 3세-1:15, 4-5세 - 1:20)을 유아교육비 산출 시 적용하였다. 한편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비를 산출한 시기는 2006년 이후로, 2005년 이전의 연구들은 운영

시간(반일제·종일제·시간연장제)별로 유아교육비를 산출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넷째, 유아교육비 산출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채택한 반면 문무경 등(2012)은 유치원의 세출결산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운영비 산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문무경 등(2012)은 유치원의 세출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후, 통계적으로 계산된 유아 연령 및 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아 1인당 유아교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표 3> 유아교육비의 전반적 산출모형

| 연도 | 전반적 산출모형 |
|---|--|
| 1994~2006년 (김계규 등(1994), 권은주, 황갑성(1997), 강경석(2001, 2005a, 2006), 강경석, 장영숙(2001), 장영숙, 강경석(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현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비를 유치원 규모별(1~7학급) 원아 수로 나누어 연간 유아 1인당 운영비를 산출 후 합산하여 연간 유아교육비 산출 • 학급당 원아 수는 25명 및 35명 기준 • 운영비 자료수집을 위해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활용 |
| 2008년 (김현숙(2008), 서문희, 박수연(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현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비를 원아 수로 나누어 월별 유아 1인당 운영비를 산출 후 합산하여 유아교육비 산출(만 3세, 만 4·5세별 유아교육비 산출) • 학급당 원아 수는 만 3세반의 경우 원아 수는 15명 기준, 만 4·5세반의 경우 원아 수는 20명 기준 • 운영시간별(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만 3세 및 만 4·5세반 유아교육비 산출 • 운영비 자료수집을 위해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선행연구 결과 활용 |
| 2012년 (문무경 등(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유치원의 현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비 중심으로 월별 유아교육비 산출 - 세출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유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비를 중심으로 월별 1인당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되, 연령별, 규모별 가중치(통계적 방법적용)를 적용하여, 연 유아 1인당 유아교육비를 산출 |

(2) 유아교육비 산정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

유아교육비 산출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을 연구별로 정리한 결과(<표

4> 참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제시되었다.

첫째, 유아교육비 산정 시 투입된 공통 운영비 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설치비, 관리운영비이며, 급간식비는 2008년 이후부터 포함되고 있다.

둘째, 몇몇 연구(김현숙, 2008; 서문희, 박수연, 2008)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계산 시, 투입된 세부 항목으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유치원 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을 포함하고 있다. 수당은 시간외 수당, 담임수당 등을 포함하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급식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치원 부담금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교직원의 퇴직적립금과 의료보험 등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직원 인건비를 계산하는 과정의 경우 「유아교육법」과 유치원 규모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교직원 유형(원장, 원감, 교사, 사무직, 고용직)과 수를 제시하되, 각 교직원의 평균호봉 및 급여, 또는 공무원 봉급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들은 교직원 유형에 보조교사를 추가하고 사무직과 고용직을 조리사 및 관리인으로 나누었으나, 각 교직원의 실제 평균호봉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계산절차는 2006년 이전연구와 동일하다.

셋째, 교재교구비의 경우 연구에 따라 포함하는 세부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교재교구비에 기준·기준외 교구비를 포함하였다. 기준 교재교구비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준외 교구비는 그 외 교재교구를 구입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반면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재교구비에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를 포함하였다. 교재교구비의 계산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재교구목록을 토대로 교재교구업체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합산한 후, 내구연한(교재교구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나누어 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를 계산하였다. 또한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경우 실제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넷째, 시설설치비의 경우 교재교구비와 마찬가지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기준·기준외 시설경비를 포함하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아 1인당 시설설치비를 계산하고 있다. 기준 시설경비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외놀이터, 교실, 유희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기준외 시설경비는 그 외 설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특히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유아교육비를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그에 상응하는 표준적인 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부합되는 교육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상비로 정의

함으로써 유치원의 초기 건축 및 시설설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면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과 달리 기준·기준외 시설경비와 더불어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 설치비, 리모델링비 등의 초기 설립비용을 고려하여 시설설치비를 계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2006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산정연구에서 건축 및 설립비를 배제하고 현재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심으로 교육비를 산출한 경향을 따르고 있는 반면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 건축 및 설비구입·유지비가 보육비에 포함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급간식비를 유아교육비에 포함한 연구는 2008년부터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점심비와 간식비를 포함하되, 유아 1일 필요열량을 토대로 구성된 식단에 일반 대형마트의 식재료 비용을 적용하여 급간식비를 산출하거나, 별도의 계산과정 없이 유치원의 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유치원의 실제 평균 유아 1인당 급간식비를 적용하고 있다.

여섯째, 관리운영비의 세부항목은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 연료비, 인쇄비, 재료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견학비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반면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견학비를 현장학습비 항목으로 교재교구비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차량운영비의 경우 2006년도 이전의 연구에서는 관리운영비에 모두 포함된 반면 2008년도 이후의 연구들은 대체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관리운영비 계산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제 유치원의 평균 관리운영비 자료를 적용하여 유치원의 규모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를 계산하고 있다.

<표 4> 유아교육비 산정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

| 연도 | 세부 운영비 항목 | 계산과정 |
|---|-----------------------------|--|
| 1994~2006년 (김재규 등 (1994), 권은주, 황갑성(1997), 강경석(2001, 2005a, 2005b, 2006), 강경석, 장영숙(2001), | 인건비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부담금) | • 유치원 규모, 운영시간(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별로 교직원(원장, 원감, 교사, 사무직, 고용직) 필요인력을 산출(「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참조)하고 각 직원의 평균호봉 및 급여, 공무원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유아 1인당 인건비 산출 |
| | 교재교구비 (기준·기준외 교구비, | • 유치원교육과정의 생활주제별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기준외 교구비와 재료비, 시설설치비 |

| | | |
|--|--|--|
| 장영숙, 강경석(2005) | 재료비) | 를 내구 연한(교재 및 설비의 경우 적용)등을 고려하여 유아 1인당 규모별 교육활동경비 산출(학교설립운영규정, 학교시설·설비 기준령(기준설비) 참조) |
| | 시설설치비 (기준·기준외 시설경비) | |
| | 공통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인쇄비, 관공비, 사무용품비, 학습자료구입비, 견학비, 행사비, 차량유지비, 재산관리비, 연구비, 보건체육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 실제 소요되는 평균 관리운영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시간별(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로 유아 1인당 공통운영경비 계산 |
| 2008~2012년 (김현숙(2008), 서문희, 박수연(2008), 문무경 등(2012)) | 인건비 (봉급, 수당, 부담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규모, 운영시간(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별로 교직원(원장, 원감, 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관리인) 필요인력을 산출한 후 교직원의 실제 평균호봉 및 급여를 적용하여 유아 1인당 규모별 인건비 산출 |
| |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 시청각기자재, 교실설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재교구목록을 작성 후,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계산 • 유아 연령, 유치원 규모 및 운영시간(종일제·연장제·반일제)별 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산출 • 현장학습비는 유치원의 평균 현장학습비 적용 |
| | 급간식비 (연령별로 하루 점심비와 1회간식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연령별 1일 권장열량을 토대로 점심과 1회 간식을 통해 섭취해야할 필요열량이 반영된 식단(육영회 등 식단참조)의 식재료 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마트, 코스트코 단가 참조, 중품과 유기능재료 비용 각각 적용)을 합산하여 유아 1인당 규모별 급간식비 산출 |
| | 시설설치비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유원장 설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1인당 단위면적(유치원 건축비 법정규정) 및 건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비와 건물수선유지비를 합산하여 유아 1인당 시설설치비 계산 |
| |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수용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1인당 법정시설면적(유치원법정시설면적규정)을 기준으로 규모별 실제 운영비를 산출한 후 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 계산 |

2) 보육비

(1) 전반적인 산출모형

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전반적인 산출모형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표 5> 참조)를 토대로 전반적인 산출절차와 산출단위, 산출기준, 보육비 산출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자료수집방법별로 연구동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모두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비용을 토대로 유아교육비를 산정한 연구들과 다르게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현실적 비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원아 수로 나누어 합산한 후, 영유아 1인당 보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를 중심으로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비용을 보육비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가정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현실을 반영하고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고려한 다양한 측면의 비용(예: 원장이 겸직을 하지 않은 경우, 취사부 인건비 추가)을 포함하여 보육비를 산출하였다.

둘째, 보육비 산출단위에 있어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과 달리 공통된 경향을 보였는데, 즉,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모두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셋째, 보육비 산출기준에 있어 유아교육비 연구들과 달리 모든 연구가 연령별(만 0~5세) 정원을 적용하여 보육비를 산출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유아교육비 산정연구 동향과 유사하게 절반 가량의 연구들에서 운영시간별(종일제, 시간연장제)로 투입되는 운영비를 토대로 보육비를 산출하였다.

넷째, 보육비 산출에 필요한 운영비 자료수집은 실태조사와 세출결산서를 활용하되, 2010년 이후부터 실태조사와 더불어 운영비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세출결산서 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보육비의 전반적 산출모형

| 연도 | 전반적 산출모형 |
|---|---|
| 2005~2011년 (한국조세연구원(2005), 이승희, 박지은(2006), 김현숙, 서병선(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운영비와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법적기준 준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기준의 인건비 기준 적용, 영유아 1인당 열량을 고려한 급간식비 산정)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비를 규모별(20인(4학급), 50인(5학급), 77인(7학급), 97인(9학급), 124인(11학급), 142인(13학급), |

| | |
|--|--|
| 서문희, 박수연(2008), 김혜금(2010), 이미화 등(2012), 임양미 등(2010), 임양미(2011) | 169인(15학급) 원아 수로 나누어 월별 유아 1인당 운영비를 산출·합산하여 유아 1인당 연령별(만 0~5세아) 보육비 산출 • 학급 당 원아 수는 「영유아보육법」 연령별 정원 반영 • 운영시간(종일제, 시간연장제)별 보육비 산출 • 운영비 자료수집을 위해 실태조사, 선행연구, 세출결산서 활용 |
| 2012~2013년 (송명희(2012), 김혜금(2013)) | •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비 산출을 위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현실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비를 원아 수로 나누어 월별 유아 1인당 운영비를 산출·합산하여 영아 연령별(만 0~2세아) 보육비 산출 • 운영비 자료수집을 위해 선행연구, 세출결산서 활용 |

(2) 보육비 산정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

보육비 산정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을 연구별로 정리한 결과(<표 6> 참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보육비 산출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공통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설치비, 관리운영비이며 2010년부터 수행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세출결산서의 운영비 항목을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공통항목에 업무추진비, 행사비가 추가되었다.

둘째, 교직원 인건비 계산 시, 투입된 세부항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봉급, 수당, 부담금만을 인건비 항목에 포함한 반면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봉급, 수당, 어린이집 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에 후생경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후생경비는 유아교육비 운영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2a). 교직원 인건비 계산과정의 경우 우선 유아교육비 산정과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법」 과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하여 제시된 교직원 유형은 원장, 교사, 취사원, 관리인, 영양사, 간호사이며 201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실태를 고려하여 운전사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과 유사하게 규모별로 교직원 필요인력을 산출하고 각 교직원의 평균호봉을 적용하여 유아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되, 적용하는 봉급수준은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과 다르게 어린이집의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수준을 적용하였다.

셋째, 교재교구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연령별 보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교구비(설비비 및 소모품 구입비용 포함) 관련 비용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교재교구비의 계산과정은 모든 연구에서 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목록을 중심으로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를 산출함으로써 유아교육비 산출연구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이전의 연구들은 교재교구비 비용을 산정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의 교재교구목록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한 반면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목록을 작성한 후, 교재교구업체의 단가를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를 계산하였다.

넷째, 급간식비의 경우 연령별로 1일 점심비와 2회 간식비로 구성된다. 모든 연구들이 급간식비 계산과정에서 영유아 연령별 1일 권장열량을 토대로 점심과 2회 간식으로 구성된 식단의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점은 유아교육비 산출연구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유치원에 비해 운영시간이 긴 어린이집의 특성을 설려 간식 횟수를 1회 더 늘려 영유아 1인당 간식비를 산출한 점은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영유아 1인당 시설설치비는 어린이집 건물 및 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2010년도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초기 건축비를 포함하는 반면 201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건축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 밖의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을 포함하였다. 시설설치비 계산과정의 경우 2010년 이전의 연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 영유아 1인당 단위면적을 토대로 평당 건축비를 적용하고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영유아 1인당 시설설치비를 계산한 반면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보육실, 사무실, 자료실, 양호실, 주방 등에서 소요되는 설비 및 비품의 물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거나, 실제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시설비 평균을 적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섯째,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의 경우 유아교육비를 산출한 연구들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차량비의 경우 2010년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제외된 반면 201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어린이집의 차량운행현실을 고려하여 차량비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였다. 관리운영비 계산과정의 경우 모든 연구들이 실제 어린이집의 평균 관리운영비를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를 계산하고 있다.

일곱째, 2010년 이후의 연구들에서 추가로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어린이집 운

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직책급(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의비(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사비는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를 의미한다. 영유아 1인당 업무추진비와 행사비는 실제 어린이집의 평균 업무추진비와 행사비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표 6> 보육비 산정에 투입된 세부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

| 연도 | 세부 운영비 항목 | 계산과정 |
|---|--|--|
| 2005~2008 년 (한국조세 연구원 (2005), 이승희, 박 지은(2006), 김현숙, 서 병선 (2008), 서 문희, 박수 연(2008)) | 인건비(봉급, 수당, 부 담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규모, 운영시간(종일제, 시간연장제)별로 교직원(원장, 교사,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관리인) 필요인력을 산출(「영유아보육법」 참조)하고 각 교직원의 평균호봉에 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의 기본급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산출 |
| | 교재교구비 (연령별 보육과정에 필요한 교 재교구(설비비 및 소모 품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보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목록을 작성 후,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계산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준의 교재교구목록 적용 |
| | 급간식비 (연령별로 하루 점심비 와 2회 간식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연령별 1일 권장열량을 토대로 점심과 2회 간식을 통해 섭취해야 할 필요열량이 반영된 식단(육영희 등 식단참조)의 식재료 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대형마트 도매시장 단가 참조, 중품과 유기농재료 비용 각각 적용)을 합산하여 유아 1인당 급간식비 산출 |
| | 시설설치비 (건축비, 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 시설설 치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1인당 법정 단위면적(「영유아보육법」 참조)에 근거해 평당 건축비를 적용하고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영유아 1인당 시설설치비 계산 |

| | | |
|--|---|---|
| | <p>관리운영비 (난방연료, 공공요금/제 세공과금, 수용경비 및 수수료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 적용 |
| <p>2010~2013 년 (김 혜 금 (2010), 임양미 등 (2010), 임 양 미 (2011), 이 미 화 등 (2012), 송 명 희 (2012), 김 혜 금 (2013))</p> | <p>인건비 (봉급, 제수당, 부담금, 기타후생경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규모, 운영시간(종일제, 시간연장제)별로 교직원(원장, 교사,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관리인, 운전사) 필요인력을 산출(「영유아보육법」 참조)하고 각 교직원의 평균호봉에 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의 기본급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산출 •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는 어린이집 평균 비용 적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은 별도 계산 |
| | <p>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균 비용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업무추진비 계산 |
| | <p>교재교구비 (연령별 보육과정에 필요한 교 재교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운영 및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교재교구목록을 작성 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산출 |
| | <p>행사비 (입학식, 졸업식, 영유 아 생일, 돌잔치, 어린 이날, 부모참여수업, 재롱잔치 등 영유아와 직접 관련된 행사경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행사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행사비 계산 |
| | <p>급간식비 (연령별(만 0~5세)로 1 회 점심비와 2회 식 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연령별 1일 권장열량을 토대로 점심과 2회 간식을 통해 섭취해야 할 필요열량이 반영된 식단(보육정보센터 식단 참조)의 식재료 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대형마트 단가 참조, 중품과 유기농 재료비용 각각 적용)을 합산하여 영유아 1인당 간식비 산출 |
| | <p>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 사무실, 자료실, 양호실, 주방 등에서 소요되는 설비 및 비품의 물량, 단가를 조사하고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 또는 실제 어린이집의 소요되는 시설비 평균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시설비 계산 |

| | |
|--|--|
| 관리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 적용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의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기준을 통해 동향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주로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반면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산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비의 경우 유아교육비와 달리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비를 분석하고 보육비를 산정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비록 보육분야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현실을 반영한 연구들(김혜금 등, 2013; 송명희, 2012; 임양미, 2011; 임양미 등, 2010)이 수행되어졌으나 전국단위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김혜금 등(2013)의 연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현실을 반영한 보육비 산정연구는 개인단위 또는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들의 전반적인 산출모형을 비교한 결과 우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세부 운영비를 각각 원아 수로 나눈 운영비를 합산하여 영유아 1인당 유아교육비·보육비를 산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연구에서 운영비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의 경우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저 운영비 중심으로 유아교육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비 산정연

구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보육비를 산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비용은 인건비와 교재교구비에 반영되었다. 인건비의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교직원의 평균호봉에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인건비 또는 평균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교재교구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소요되는 교재교구비 또는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육비 산정 연구들에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한 점은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89.7%)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수준 제고를 목표로 보육비 산정 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의 비용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연구가 시작된 시점에 비해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반영한 운영비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즉, 교재교구비의 경우 2013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재교구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되, 만 0~2세반의 경우 현행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재교구 비용이 산출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교재교구비는 국가단위의 보육과정(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교구 중심으로 책정되며 오후시간에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부모 의사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육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된 점(하채림, 김경운, 2013)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유아교육비 및 보육비 산정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급여수준을 참고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여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유아교육비의 산정연구들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유아교육비 산정 시, 운영시간에 따른 금액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절반 정도의 보육비 산정연구들 역시 운영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점은 12시간 미만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비해 12시간 이상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임양미(2011)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며, 몇몇 연구들(서문희, 박수연, 2008; 이승희, 박지은, 2006)에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비를 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유아교육비 및 보육비 산정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영유아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보육비를 산출하되, 중앙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영유아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교육비 산정 연구들의 경우 유치원의 연령별 교사 대 유아비율이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로 25명 및 35명의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아교육비를 산출한 경향이 있었다. 반면 보육비 산정연구들의 경우 모두 「영유아보육법」의 연령별 교사 대 영유아 비율(만 0세-1:3, 만 1세-1:5, 만 2세-1:7, 만 3세-1:15, 만 4·5세-1:20) 지침을 고려하여 영유아 1인당 지급해야 되는 보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반에서는 공통의 누리과정이 적용되며, 유치원의 경우 만 0~2세아 입학을 본격적으로 허용할 의지(염지은, 2013)를 보인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비용의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동일한 영유아 대 교사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책적으로 동일한 영유아 대 교사비율 기준의 적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부처가 통합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부처 통합에 앞서 공통된 지침은 수립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은 부처 통합에 앞서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형태의 간격을 좁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반 보육·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최근 만 0~2세 영아를 수용하는 유치원을 운영하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종일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대부분(95.5%)(육아정책연구소, 2011)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두 기관의 운영상 차이는 단계적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일한 영유아 대 교사비율 기준의 적용 역시 부처통합에 앞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정책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향후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연구를 수행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 자료를 수집할 경우 실태조사와 더불어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과반수의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어린이집의 세출결산서를 활용함으로써 객관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연구 수행 시,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현실을 반영하는 회계문서 등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시 투입된 운영비 항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투입된 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항

목은 실제 유아교육비와 보육비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반면 급간식비의 경우 연구 주제(유아교육비/보육비)에 따라 유아교육비와 보육비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급간식비를 유아교육비에 포함하지 않은 반면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모두 급간식비를 보육비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행법상 유아교육분야의 경우 급간식비는 유아교육비 단가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부모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책정되며, 보육분야에서는 급간식비가 보육비에 포함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비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급간식비가 추가로 부모 부담의 경비로 수납되는 현실에 반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비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급간식비가 보육비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지급됨으로써(김현숙, 서병선, 2008; 김혜금, 2010) 정부지원이 부족한 민간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급간식비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산정 시, 일정기준(예: 1일 열량 기준의 식단)을 중심으로 책정된 급간식비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급간식비를 유아교육비·보육비에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이라는 공통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시, 연구주제 및 연구자에 따라 세부 운영비 항목내용과 계산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우선 인건비의 경우 전체 인건비 산출에 포함되는 교직원인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의 경우 원장, 원감, 교사, 사무직, 고용직(관리인, 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반면 보육비 산정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원장, 교사, 취사원, 영양사, 관리인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차량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운전사를 추가한 연구들도 있었다. 즉,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건비 산출에 포함된 교직원은 원장, 교사, 취사원, 관리인이며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원감을, 보육분야의 경우 영양사, 운전사, 간호사를 별도로 포함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구주제(유아교육비/보육비)에 따라 인건비 산출에 포함된 교직원 직종의 차이는 현행법과 운영현실을 통해 설명된다. 우선 유아교육 분야에서 원감은 「유아교육법」 제 75조 3항에 지위, 자격 및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교사를 둔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려하며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유고 시 원장을 대리한다”(교육법 제 75조 3항) 및 “원감은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유

치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을 받은 자”(교육법 제 79조 3항)라는 지침을 통해 원감의 지위, 자격 및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임양미, 2012).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원감과 유사한 주임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주임교사의 자격이나 역할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유아교육비 산정 시, 법적 지위와 역할이 보장된 원감이 인건비 산출에 포함되고 있다. 반면 영양사(간호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일 지역(시·군·구) 내에서 5개의 어린이집이 공동채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2a).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모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간호사)를 포함하여 보육비를 산정하고 있었다. 한편 보육비 산정연구들 중 몇몇 연구들은 차량운행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운전사와 차량운영비를 보육비에 포함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인력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며 보육비 산정에 이러한 인건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이 원칙이며 유치원의 경우 종일제로 운영되는 경우(95.5%)가 대부분으로(육아정책연구소, 2011)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정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의 질 관리를 위해 영양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채용할 경우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된 지침을 고려하여 인근지역 몇몇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0세가 많은 어린이집 중 950개소를 선발해 방문 간호사를 파견해 영아의 건강을 월 2회씩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업을 수행중이라는 점(임양미, 2012)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문 간호사는 영아 돌연사 예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의 위기 상황 대처법 교육과 건강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량운행률을 고려하여 차량운전자 채용에 대한 법적지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시점이다. 전국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차량운행률은 62.3%이며(이미화 등, 2012) 유치원의 경우 51.4%(유치원 알리미, 2013)로 과반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차량운행 경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차량

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도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차량운행비의 경우 유아교육비나 보육비에 포함하는 대신 차량을 이용하는 부모가 추가로 지급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교직원 인건비는 김현숙과 서병선(2008), 김혜금(2010)의 연구를 통해 영유아 1인당 운영비 항목 중 과반수(45~51%)를 차지할 만큼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라는 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결과 교직원 인건비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유치원 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을 포함하는 반면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2010년 이후부터 봉급, 수당, 시설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에 후생경비를 포함하고 있었다. 교직원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시, 동일한 인건비 기준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교직원의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퇴직적립금은 기본봉급의 1/12, 사회보험시설부담비의 경우 기본봉급의 9.08%(2012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에서 부담한다. 특히 사회보험시설부담비는 해마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증가되는데, 2009년에는 교직원 보수월액의 8.44%이던 사회보험시설부담비용이 2012년에는 9.0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 인건비 산정 시, 동일하게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시설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 등)의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러한 금액이 보육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보육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직원의 인건비 산정 시, 봉급 외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시설설치비 특정 하위 항목의 경우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 시, 포함 여부에 있어 연구주제(유아교육비/보육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 중 초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건축비 등의 초기 설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보육비 산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초기비용(건축비 및 시설설치비 등의 비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립 시, 신축 및 매입, 리모델링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유아교육비 및 보육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므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물품과 비품, 설비 구입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시설설치비를 계산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연구들이 대부분 학술논문에 국한되어 수행된 반면 연구주제의 특성상 학술논문 외 국책연구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소, 민간단체(예: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연구보고서까지 포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를 종합하여 함께 비교·분석한 점은 기존의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이 유아교육 또는 보육 중 한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점과 차이가 있다. 비록 유아교육비·보육비의 산정과정을 다룬 연구는 관심을 덜 받은 분야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21편에 불과했으나, 이 연구주제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유보통합'이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정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된 유아교육비·보육비 산정과정에 있어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에 대한 기준이 적용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균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유아교육비 및 보육비에 대한 공통적 산출기준의 적용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경석(2001). 유치원 교육재정 분석 및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2), 1-43.
- 강경석(2005).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교육재정학연구**, 23(4), 175-198.
- 강경석(2005). 유치원 수업과정(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에 따른 표준교육활동경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4(2), 1-24.
- 강경석(2006).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103-133.
- 강경석, 장영숙(2001). 유치원 표준교육활동경비 산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3), 167-189.
- 고선미(2000). 유아교사관련 학위논문 경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법」 시행령.
- 권은주, 황갑성(1997). 표준교육비 산출에 의한 사립유치원 교육재정 분석. **유아교육연구**, 17(1), 45-66.
- 김경희, 문혁준, 김선영, 김신영, 김지은, 서소정, 안선희, 안효진, 이희경, 정선아, 황혜원(2011). **보육학개론**. 서울: 창지사.
- 김명순(2013). 표준보육과정의 개요. 한국아동학회 2013년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워크샵, 1.
- 김미경(1998).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동향에 대한 토론. 중앙유아교육학회 제5회 유아교육학술대회, 79-84.

- 김병만(2012).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4), 5-31.
- 김상림, 안효진, 이시자(2011). 유아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1(2), 147-171.
- 김영옥(2003). 유아교육연구의 동향 및 과제. **한국교육학회소식지**, 237, 5-10.
- 김재규, 공은배, 백성준, 이원영(1994). 유치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29-50.
- 김춘희, 남기원, 우영숙, 최순덕(2011).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연구동향. **유아교육학논집**, 15(5), 569-597.
- 김현숙(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포럼**, 107, 46-57.
- 김현숙(2008). 표준유아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일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7(2), 161-188.
- 김현숙, 서병선(2008). 보육비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승실대학교.
- 김혜금(2010). 보육비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김혜금, 임양미, 최현수, 조혜영, 염마영(2013). 가정어린이집 보육 운영현황 및 표준보육비 산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 노영희(2009). 유아의 내러티브의 연구동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303-330.
- 마송희(2007). 유아영어교육 연구동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85-208.
- 마송희(2011). 통합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유아교육학논집**, 15(5), 227-247.
- 문무경, 천세영, 황현주, 이진경(2012). 표준 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문선화(1995). 영유아 보육에서 표준보육단가 산출방식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2, 15-37.
- 백선희, 김교성(2003).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부담 방안과 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27, 210-237.
-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2006). 보육·유아교육 기본보조금의 내용과 과제. **육아정책포럼**, 1, 6-19.
- 서문희(2010). 보육비·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4(2), 76-95.
- 서문희, 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적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현아, 김정주(2010). 유아 다문화 관련 연구의 경향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65, 59-78.
- 손원경, 박진희, 전주영(2012). 유아과학교육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95-114.
- 송명희(2012). 가정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전국가정시도연합

- 회 주최 영아보육 질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12-40.
- 송정은(2005).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제도에 관한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2, 259-273.
- 송현숙, 이혜리(2013.3.8). 사립유치원 월 100만원 시대. **경향신문**.
- 염지은(2013.5.28). 0~2세도 유치원 입원 허용추진. **뉴스1코리아**.
- 유치원 알리미(2013.3.4). <http://e-childschoolinfo.mest.go.kr/>
- 육아정책연구소(2011). 유아교육·보육 주요통계.
- 이경란, 정기섭(2011). 유아 다문화교육 연구 경향분석: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석·박사 학위논문들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7(2), 5-28.
- 이대균, 백경순(2001). 1990년 전후반기 유아교육관련 학위논문의 동향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6(3), 219-234.
- 이대균, 백경순, 김현수(2006). 열린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169-188.
- 이미화, 서문희,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권미경, 양미선, 손창균, 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 서문희, 임양미, 이진경(2012).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승희, 박지은(2006).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57-79.
- 이재무, 송영선(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379-399.
- 이현용(2012.11.15). 박근혜 -보육교사 초과근무 정부지원 추진. 불교방송.
- 임양미(2011). 2012년 경기도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산정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양미(2012). 어린이집 비 담임교사 제도에 대한 토론. 경기 보육주간 보육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47-50.
- 임양미, 전경숙, 김혜금(2010). 경기도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산정연구: 만 3~5세아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미정(2012).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관련 국외연구 동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01-522.
- 장영숙, 강경석(2005). 종일제 유치원 표준교육활동경비 산출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413-434.
- 장영숙, 이효숙, 유경숙, 황윤세(2002). 교육비 분석을 통한 유치원 교육재정 방향 모색. **유아교육학논집**, 6(2), 39-64.
- 정설희, 류은주, 안연경(2010). 유아 또래관계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33-352.
- 정설희, 임양금, 안진경(2009). 유아 미술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1998-2008년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297-319.

- 정성수(2008). 한국 교육정책학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6(4), 191-216.
- 정유림(2012.8.27). 곁도는 공공보육 .. 교사와 아이만 지친다. 웰페어뉴스.
- 최미숙, 황윤세(2004). 유아발달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24(5), 187-205.
- 프리즘 (2013. 2.28).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 하남재, 석재은(2011).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38(2), 139-163.
- 하채림, 김경윤(2013.5.30). 보육교사 급여 유치원 교사수준으로 올린다. 연합뉴스.
- 한국보육진흥원(2013).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내부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허선, 박효진(2010). 보육료지원제도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63, 177-201.
- 현진권(2010). 보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 51-54.
- 황혜익(1998). 유아교육 관련 학위 논문의 연구방법론 고찰: 1980년 이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논총**, 8, 111-135.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of studies on estimation of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provided by both the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A total of 21 papers including academic journals and policy research reports were collected. The papers were analyzed with the annual trends, research contents, and estimation methods of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studies on estimation of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performed earlier than the ones on estimation of cost for child-care services. The research contents were composed of analyzing operating expenses and estimating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Secondly, there were similarities in the estimating processes of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but the definition of operating expenses used for the estimation of cost differed. Thirdl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tems of operating expenses inputted to estimate cost and in the calculation procedures of items in studi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what future studies and policy should consider in the estimation of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 *Key Words* :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ost for child-care services, operating expenses*

| | |
|--------|---------------|
| 논문투고 | 2013. 04. 15. |
| 수정원고접수 | 2013. 08. 07. |
| 최종게재결정 | 2013. 08. 16. |